

2004년도 화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 - 235
----------	---------

제출년월일 : 2004. 3. 31.

제 출 자 : 화 주 시 장

□ 제안이유

- 우리시는 판문점, 제3땅굴 등이 위치한 안보관광지로서 연간 3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 관광안내 기능이 필요한 실정으로,
-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유로 휴게소에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자 추진해 왔으나 건립부지가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재산으로서 소유권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 관광안내소 건립 부지를 안보관광의 최초접점인 제3땅굴로 이전·건립하기 위해 일부 사유지 매입과 안내소를 신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취 득 재 산 명	위 치	면적(m ²)	금액(천원)	비고
관 광 안 내 소	점원리 1082	토지 : 2,141m ²	35,755	취득
	점원리 1082외1	건물 : 100평규모	500,000	신축

□ 공유재산 취득 세부내역

○ 관광안내소 신축부지

- 대상토지 : 군내면 점원리 1082 (지목: 전, 2,141㎡)
- 취득예정가 : 35,755천원(감정평가에 의한 산출금액임)
- 소유자 : 조재수
- 취득방법 : 협의매수
- 국토계획 : 자연환경보전지역
- 활용용도 : 안내소신축부지

○ 관광안내소

- 건물위치 : 군내면 점원리 1082외 1필지
- 건축규모 : 100평(안내소40/휴게시설30/특산물판매장30)
- 재산액 : 500백만원(부대시설포함)
- 취득방법 : 건물신축
- 활용계획
 - 주변지역 안보 관광시설 종합안내 및 휴식공간 제공
 - 숙박, 음식점 등 관광 연계시설 홍보 및 지역특산물 판매

□ 토지위치도 : 별첨

□ 관련법규 : 별첨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4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m ² , 천원)	
구분	구분	당초		변경		합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비고
총계	토지	3	2,192	878,775	1	2,141	35,755	4	4,333	914,530	
	건물	3	1,700	3,100,000	1	330	500,000	4	2,030	3,600,000	
	기타										
계	토지	3	2,192	878,775	1	2,141	35,755	4	4,333	914,530	
	건물	3	1,700	3,100,000	1	330	500,000	4	2,030	3,60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3	2,192	878,775	1	2,141	35,755	4	4,333	914,530	
	건물	3	1,700	3,100,000	1	330	500,000	4	2,030	3,60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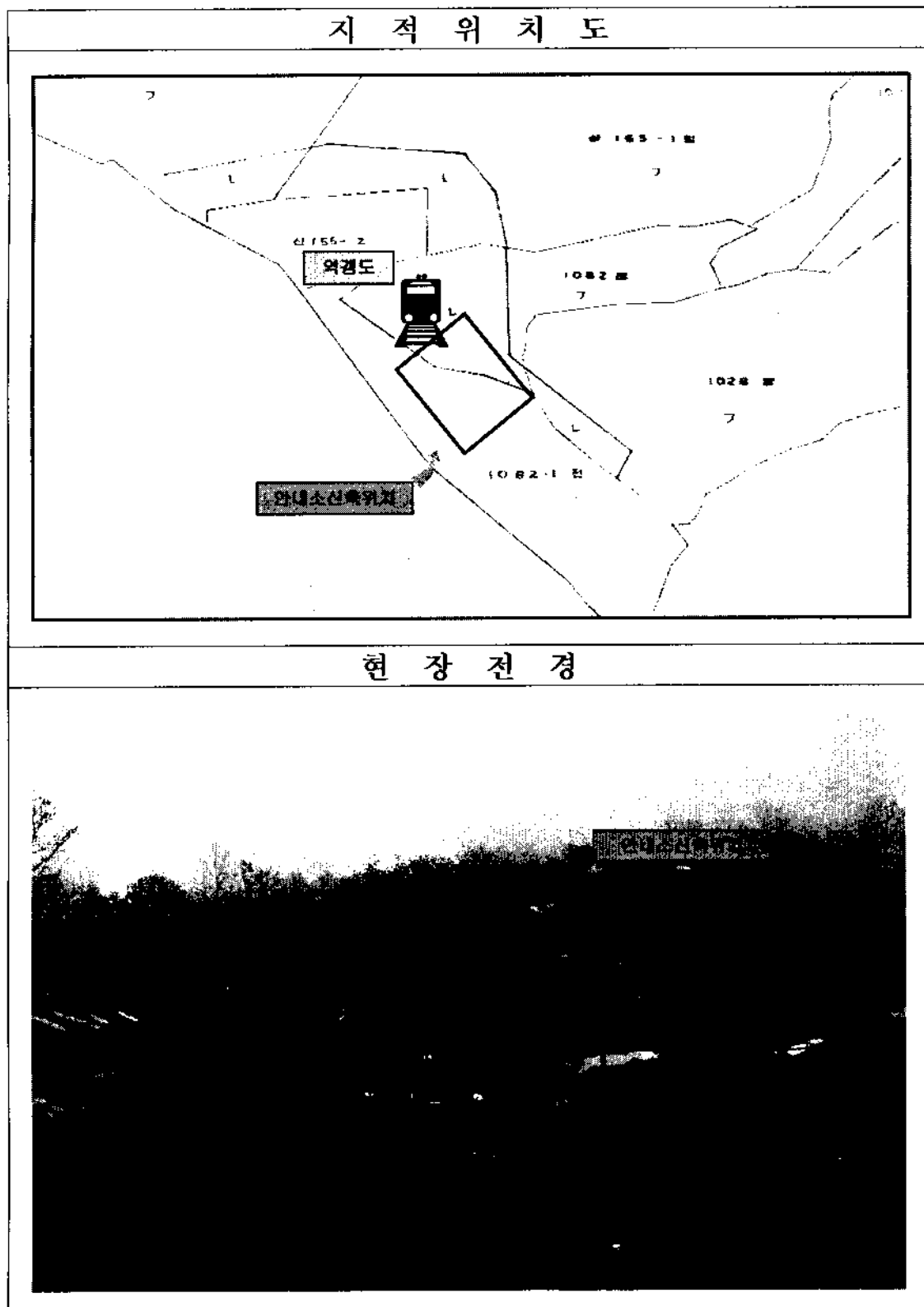
2004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시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2,141	35,755	2004년	관광안내소	파주시	
	건물	330	500,000	2004년	관광안내소	파주시	
1	토지(전)	군내면 점원리 1082	2,141	2004년	관광안내소	파주시	취득
2	건물	군내면 점원리 1082	330	2004년	관광안내소	파주시	신축

□ 위치도 및 현장전경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변경안은 2004년 3월 3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우리시는 판문점, 제3땅굴 등이 위치한 안보관광지로서 연간 3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 관광안내 기능이 필요한 실정으로,
-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유로 휴게소에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자 추진해 왔으나 건립부지가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 재산으로서 소유권 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 관광안내소 건립부지를 안보관광의 최초접점인 제3땅굴로 이전·건립하기 위해 일부 사유지 매입과 안내소를 신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취득재산명	위 치	면적(m ²)	금액(천원)	비고
관광안내소	점원리 1082	토지 : 2,141m ²	35,755	취득
	점원리 1082외 1	건물 : 100평규모	500,000	신축

3. 공유재산 취득 세부내역

□ 관광안내소 신축부지

- 대상토지 : 군내면 점원리 1082(지목 : 전, 2,142m²)
- 취득예정가 : 35,755천원(감정평가에 의한 산출금액임)
- 소 유 자 : 조재수
- 취득방법 : 협의매수
- 국토계획 : 자연환경보전지역
- 활용용도 : 안내소 신축부지

□ 관광안내소

- 건물위치 : 군내면 점원리 1082외 1필지
- 건축규모 : 100평(안내소40/휴게시설30/특산물판매장30)
- 재 산 액 : 500백만원(부대시설포함)
- 취득방법 : 건물신축
- 활용계획
 - 주변지역 안보 관광시설 종합안내 및 휴식공간 제공
 - 숙박, 음식점 등 관광 연계시설 홍보 및 지역특산물 판매

4. 검토의견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과주시 군내면 점원리 1082번지 2,141㎡의 토지를 신규 취득하여 동 부지에 약 100평 규모의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은 당초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유로 휴게소에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자 추진했으나 건립부지가 건설교통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분쟁 등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다른 장소에 건립을 전제로 지난 제75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업임.
- 이후 시에서는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한 결과 안보관광의 최초접점인 제3땅굴로 이전·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인근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동 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안내소는 총 100평 규모의 시설로 건립하여 제3땅굴 도보관람로 이용 관람객들의 편의와 주변지역의 안보관광 시설 종합안내 및 휴식공간제공, 관광 연계시설 홍보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임.
- 국내 대표적 안보관광지인 제3땅굴의 국내외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오는 6월 완공목표인 도보관람로가 신설될 경우 방문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관광안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 제3땅굴 앞으로 관광안내소를 이전·건립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소를 제3땅굴로 이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에 사업대상지 변경승인 요청 절차의 이행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25%) 부담액 125백만원의 예산확보(추경)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동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군부대 및 유엔사령부와의 협의 과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地方自治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1994·3·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地方財政法施行令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등)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 위치도 및 현장전경

